

국토교통부훈령 제2024-1750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연 월 일	2024. 5. 17 .

1. 개정이유

우리 부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사운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운영 특례 규정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사운영 특례 규정에서 삭제되는 부분은 연장을 종료하고,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현안 업무 수행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 권한을 위임하고,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존에 적용 중인 인사운영 특례 사항인 경제직위군 선발, 필수보직기간 별도 적용 기간을 연장하되, 법령 개정에 따른 근속승진 횟수 확대, 명예퇴직 수시 실시 등의 제도 적용기간 종료
(안 제71조 및 부칙 제2조)
- 나. 제6호 전보에 대한 사전승인 권한 위임(안 제3조제2항제4호)
- 다. 필수보직기간 완화(안 제26조의2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보하려는 경우 사전승인 제26조의2제2항 중 “2년으로 한다”를 “별표 15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변인실·감사관실·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을 “대변인실·감사관실·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5와”를 “별표 16과”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항자격심사관 고정익, 회전익 분야 직위군(전문임기제 가급에 한함)

제7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국토정책관(국토정책과, 수도권정책과,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성장거점정책과) 내 전보
2. 도시정책관(도시정책과, 도시경제과, 도시활력지원과, 녹색도시과, 스마트도시팀) 내 전보

별표 15를 별표 16으로 하고,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71조에 따른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실·국·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 (제26조의2제2항 관련)

○ 실·국·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

구분	필수보직기간
본부 동일 실 내 정책관 간의 전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내 국 간의 전보 포함)	2년
본부 동일 실 내 직할부서와 정책관 간의 전보	2년
본부 동일 실·국 내 직할부서 간의 전보	1년
본부 동일 실·국 내 정책관 내의 전보 (모빌리티자동차국, 도로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내의 전보 포함)	1년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 (제26조의2제4항 관련)

○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시 필수보직기간

대상 부서(직위)	필수보직기간
지방국토관리청 동일 과 간의 전보 * 단, 운영지원과는 제외함	1년
국토관리사무소 동일 과 간의 전보 * 단, 운영지원과는 제외함	1년
지방항공청 공항출장소 간의 전보	1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생략)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보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
③ ~ ⑫ (생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필수보직기간의 지정)	제26조의2(필수보직기간의 지정)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각의 실·국·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u>2년</u> 으로 한다.	② ----- ----- ----- ----- ----- <u>별표 15와 같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u>대변인실·감사관실·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u> 소속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③ ----- ----- ----- <u>대변인실·감사관실·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u> 기획총괄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기관 간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15와 같다.

제71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1. 2. (생략)

<신설>

②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에 따라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공무원임용령」

과 -----
-----.

④ -----

----- 별표 16과
-----.

제71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운항자격심사관 고정익, 회전
익 분야 직위군(전문임기제
가급에 한함)

<삭제>

제35조의4제6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5급 공무원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1. 건설안전과, 도로시설안전과, 철도운영과, 철도시설안전과 간 전보

2.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자동차정책과, 자율주행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 간 전보

④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은 매달 10일(해당 일이 토요일 또는 공

③ -----

--.

1. 국토정책관(국토정책과, 수도권정책과,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성장거점정책과) 내 전보

2. 도시정책관(도시정책과, 도시경제과, 도시활력지원과, 녹색도시과, 스마트도시팀) 내 전보

<삭 제>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하고, 명예퇴직예정일은 매달
말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
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
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기관
인사운영상 본문의 일정을 지키
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